

■ **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8.9.27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4.12.24>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4.12.24>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4.12.24>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<개정 2014.12.24>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<개정 2014.12.24.>
 -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19.10.1.>
 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신설 2019.10.1.>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4.12.24.>
 8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4.12.24.>
 9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<신설 2018.9.27., 개정 2019.10.1.>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. <신설 2018.9.27.>
1. 공직자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그 퇴직일
 2.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■ **전문계약직원 등 관리규칙 제11조(정년)** ① 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관리 분야 업무지원직원 : 65세
 2. 완화의료(호스피스) 분야 업무지원직원 : 만 62세 <개정 2024.6.13.>
 3. 제1호 및 제2호 외 업무지원직원 : 만 60세 <신설 2024.6.13.>
- ② 업무지원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정년이 지난 청소관리 또는 완화의료(호스피스) 분야 업무지원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, 재고용되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24.6.13.>

[전문개정 2019.10.07.]

- **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(시험의 방법 및 절차)**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1. 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, 경력 등을 서류에 따라 심사한다. 다만,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면접시험 전에 학교성적 등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.
 2.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 등을 검정한다.
 3.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,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한다.
 4.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.
 5.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. 다만, 채용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,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-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심사,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,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■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2.1.4>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<신설 2016.3.29, 2022.1.4>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1.4>
 - 바. 삭제 <2022.1.4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 <신설 2022.1.4>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6.3.29, 2022.1.4>
- 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3.29, 2022.1.4>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.4.>

- **인사규정 제16조(합격자 결정)** ①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하되,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②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용전형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.
 1.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
 2. 합격 또는 임용된 직원이 채용비리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되는 경우
 3.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
 -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예비합격자 중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경우에는 최종전형단계의 예비합격자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.

- **직원채용세칙 제17조(채용시험의 가산점 기준)** ①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규칙 제12조를 따르며,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부가점수는 채용 직종·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가산점 부여는 서류심사에 한하여 적용하며, 서류심사 과목당 4할 미만 이거나 전 과목 평균 6할 미만 득점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서류심사에 한해 일괄 합격 처리하고, 이후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.9.>
 - ③ 제1항에 의한 가산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.

- **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2조(공개채용시험의 특전)** ① 공개경쟁 채용 전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에 해당 비율의 가산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1.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5% 또는 10% <개정 2017.03.23., 2024.12.31.>
 2.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(수련생 포함)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: 5% <개정 2024.12.31.>
 3.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(수련생 포함)중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: 3% <개정 2024.12.31.>
 4. 업무지원직원 또는 비정규직원(수련생 포함)중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근무평가 총점이 8할 이상인 자 : 1% <개정 2024.12.31.>
 5. 기타 전문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(인사위원회 및 의사직인력운영심의위원회 심의) : 5% 이내 <개정 2017.03.23.>
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은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라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,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산은 과목당 4할 미만 이거나 전과목 평균 6할 미만 득점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12.31.>
 -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 <신설 2024.12.31.>

- **직원채용세칙 제19조(예비합격자의 운용)** ① 병원장은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각 채용전형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관리하며,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 순으로 서류심사의 예비합격자는 아래의 표 기준으로 선발하고, 면접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한다. 다만, 직종·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예비합격자 사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전형별 선발인원	1명 ~3명	4명 ~6명	7명 ~10명	11명 ~20명	21명 ~30명	31명 ~40명	...	91명 ~100명	101명 ~500명	501명 이상
예비합격자 운영인원	3명 이내	4명 이내	5명 이내	6명 이내	7명 이내	8명 이내	...	14명 이내	15명 이내	20명 이내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전형별 평가점수가 과목당 4할 미만, 평균 6할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로 지정할 수 없다.
- ③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.
- ④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 결격사유 존재, 퇴직 등의 사유로 추가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전형단계의 예비합격자 중에서만 채용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당해 채용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연단위 대규모로 채용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.9.>